

서울특별시 노동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 가. 의안번호 : 제532호
- 나. 제안자 : 이광호 의원(찬성의원 13명)
- 다. 제안일자 : 2019년 3월 29일
- 라. 회부일자 : 2019년 4월 3일

2. 제안이유

- 가. 노동자복지시설 중 전태일 노동복합시설은 노동권의 활동 및 비조직 노동자·단체의 활동을 위해 시민들에게 개방될 예정인 바 목적에 맞는 사용료 기준을 정하고자 함
- 나. 자치구 노동복지시설은 자치구 개별 조례로 설치·운영됨에 따라 지역별 편중, 종사자 처우 및 지원서비스 등의 형평성 문제 등 한계가 있어, 시민 노동권의 보호 형평성 확보를 위해 시립 노동자 종합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함으로써 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사용료의 부과·징수 근거 및 사용료 기준 추가(안 제8조 및 별표2)
- 나. 서울특별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명칭 및 기능 추가(안 별표1)

4.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가. 개정안의 개요

- 개정안은 전태일 노동복합시설 내 노동허브의 사용료 기준을 목적에 맞게 규정하고, 서울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

나. 전태일 노동복합시설 사용료 규정(안 제8조, 별표2 신설)

- 서울시는 한국 노동운동의 역사를 보여주는 전시공간과 노동자 지원 시설이 집약된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 기념관(노동복합시설)”을 조성하고 4월말 정식 개관을 앞두고 있음.

〈전태일 기념관 개요〉

- ▶ 위치 : 종로구 청계천로 105 (관수동 152-1)
- ▶ 운영방식 : 민간위탁
- ▶ 수탁기관 : (재)전태일재단
- ▶ 개관일 : 2019년 4월 30일 예정

▶ 규모 및 층별용도 : 지상6층 / 연면적 1,916.15 m^2 (토지 553.1 m^2)

| 구분 | 면적 | 입주계획 | |
|----|--------------|-----------|-----------------|
| 1층 | 392.96 m^2 | 전태일 기념관 | 수장고, 주차장, 기계실 등 |
| 2층 | 369.86 m^2 | | 공연장, 사무공간 |
| 3층 | 409.09 m^2 | | 전시실 |
| 4층 | 409.09 m^2 | 노동 허브 | |
| 5층 | 266.08 m^2 | 서울노동권익센터 | |
| 6층 | 70.10 m^2 | 사무 및 휴게공간 | |

- 4층에 위치하는 노동허브(409.09 m^2)는 노동권익 활동 및 비조직 노동자와 단체의 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되며, 공유재산 관련 법령에 따른 사용료는 입주단체 당 월 115만원(55,805원/ m^2) 수준임 [참고자료1].
- 개정안은 산출된 사용료가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노동단체를 위한 공간을 제공하는 시설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유사 사례를 참조해 1 m^2 당 월 5,000원의 사용료를 책정하였음.
- 서울시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노동단체들의 지원 공간을 당사자 단체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정한 사용료를 적용해야할 당위성은 인정됨.

〈서울시 유사 사용공간 사용료〉

- ▶ 인생이모작지원시설 창업·창직 지원공간 사용료 : 월 5,000원/ m^2
 -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보증금 1백만원, 관리비 별도
- ▶ 청년청 입주공간 사용료 : 월 3,655원(연간 43,860원)/ m^2
 -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조례」, 공유재산 사용료 산정방식에 따름. 보증금 없음, 관리비 : 2,333원/ m^2)

- 다만 서울시가 전태일 노동복합시설과 같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요율과 산출범위가 정해져 있음.
- 시행령에서는 다른 법령에 따로 정하지 않는 한,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¹⁾.
- 법령의 위임을 받은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서는 대부료율을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50 이상으로 정하고, 예외적으로 공용·공공용인 경우에 한해 1천분의 25 이상으로 허용하고 있음.
- 다만 다른 조례에서 별도로 정할 경우는 이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나²⁾, 이 경우에도 공유재산 관계 법령의 사용료율(대부료율) 위임 범위를 벗어날 수는 없음.
- 그러나 개정안은 조례로 재산평정가격의 1% 미만으로 사용료를 따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상 조례의 제·개정 허용 범위³⁾를

1) 제14조(사용료)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시가(時價)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評定價格)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월할(月割) 또는 일할(日割)로 계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행정재산의 사용료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른다.

2) 제26조(대부료의 요율) ① 영 제31조에 따른 연간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또는 다른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채광물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임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3)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이탈하는 등 법률우위의 원칙을 훼손할 수 있어 신중한 법리적 판단이 요구됨.

- 이에 따라 조례를 통한 공유재산의 별도 사용료 규정 가능 여부에 대해 법률자문 결과,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다수임.

〈법률자문 결과〉

| | 갑 | 을 | 병 |
|-------|---|---|---|
| 자문 결과 | 불가능 | 가능 | 불가능 |
| 자문 내용 | 공유재산법에 사용료 감면에 대한 근거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사안의 <u>조례 제정이나 사용료 감면은 허용되지 않음.</u> | 해당 조례는 수익적인 조례이며, 법령의 목적과 효과를 저해하는 바가 없고 법령과 조례의 목적이 동일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각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의 실정에 맞게 별도로 노동시설의 취지에 부합하는 사용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것인바 조례가 법령에 위반된다고 볼 여지가 적은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u>별도의 사용료를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u> | 공유재산법이 지방자치단체의 사용료 징수를 기속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면서(제22조) 감면은 재량행위로서 허용하고 있는 점(제24조), 공유재산법 및 그 시행령에서 행정재산의 연간 사용료를 임의로 정할 수 있도록 조례에 위임하지 않고 그 하한을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으로 명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u>조례에서 그 보다 적은 사용료를 규정하는 것은 위법한 것으로 보임.</u> |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다. 서울시 노동복지시설에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추가 (안 별표1)

- 서울시는 노동자들의 복지 향상과 인식 개선을 위해 서울 노동권익센터와 자치구 노동복지센터를 운영 중에 있음.
- 자치구 노동복지센터는 노동복지센터, 근로자복지센터, 노동권익센터 등 다양한 명칭을 가지고 있어, 이를 “노동자 종합지원센터”로 일원화할 계획임.
- 또한 노동정책의 일관성·실효성 제고 및 시민 접점 서비스 확대를 위해 권역별 노동자 종합지원센터를 추가 설립할 예정임.
- 이에 서울시 노동복지시설에 “서울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를 추가하여 권역별 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 다만 자치구 센터(舊 노동복지센터)⁴⁾와 서울시가 위탁 운영할 권역별 센터가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고 있어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서울시 노동정책의 체계성·일관성 확보를 위해 두 센터간의 명칭 정리가 필요함.

4) 자치구 센터는 조례 제7조(자치구 노동복지시설의 지원)에 근거하여 서울시가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 일부를 보조 중임.

〈서울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체계〉

| 자치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 권역별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동/서대문/구로/노원/성북/강서/광진/관악/양천/강동 등 10개소 운영 중 - 중구/중랑구 개관예정 - 2019년 3개소 추가 조성 예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시설 집적지, 이용자 편익 등 고려 - 하반기 2개소 조성 예정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구 개별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 - 서울시가 운영비 등 일부 보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정안을 통한 설치·운영 근거 마련 - 서울시 예산을 통한 위탁운영 예정 |

| 담당 조사관 | 연락처 |
|--------|--------------|
| 김나래 | 02-2180-8057 |

[참고자료1] 노동허브 사용료 산출내역

| 부지면적 | 건물연면적 | 허브공간(6개소) 면적 | m ² 당 시가표준액 | 산출결과 |
|---------------------|------------------------|--|-----------------------------------|---|
| 553.1m ² | 1,916.15m ² | 123.98m ² (1개소 평균 20.66m ²) | -부지: 25,000,000원 -건물: 287,066원 | - 총 사용료: 83,025,495원 - 1개소 평균: 13,837,582원 (월 1,153,131원) |

▶ 연간 사용료 = 재산가격*사용료율=3,019,108,894원×0.025=83,025,495원

* 재산가격 = 건물가액+부지가액
 = (사용건물면적**×m² 당 시가표준액)+(사용부지면적***×m² 당 시가표준액)
 = (233.38m²×287,066원)+(118.08m²×25,000,000원)
 = 66,995,554원+2,952,113,339원=3,019,108,894원

** 사용건물면적 = 사용허가 건물전용면적
 +건물 총 공용면적×(사용허가 건물전용면적/건물 총 전용면적)
 =123.98+902.91×(123.98/1023.24)=233.38m²

***사용부지면적 = 사용허가 부지전용면적
 +부지 총 공용면적×(사용허가 건물(전용+공용)면적/부지 내 건물연면적)
 =0+553.1×(409.09/1,916.15)=118.08m²

※ 재산가격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사용료율(2.5%)은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6조제4항제1호를 준용

※ 사용건물 및 부지면적은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합쳐 산출함.

[참고자료2] 자치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운영 현황

| 센터명 | 주소 | 설립일 | 규모 (m ²) | 인력 |
|----------------------|------------------------------------|---------------------|-------------------------|---------------------|
| 성동 근로자복지센터 | 성동구 상원6나길 22-11호 | ‘11.5.12. | 54 | 4명 |
| 서대문구 근로자복지센터 | 서대문구 통일로 484 | ‘11.7.27. | 185 | 4명 |
| 구로구 근로자복지센터 | 구로구 디지털로 242 | ‘12.3.20. | 117 | 4명 |
| 노원구 노동복지센터 | 노원구 한글비석로 530 | ‘12.6.1. | 62 | 5명 ※1명 자치구 총당 |
| 성북구 노동권익센터 | 성북구 화랑로 211 | ‘17.7.10. | 145 | 4명 |
| 강서구 노동복지센터 | 강서구 우장산로 66 | ‘17.9.18. | 167 | 4명 |
| 광진구 노동복지센터 | 광진구 자양로 116 | ‘17.10.19 | 169 | 4명 |
| 관악구 노동복지센터 | 관악구 낙성대로 38 | ‘17.11.1. | 53 | 4명 |
| 양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 양천구 목동동로 81 | ‘19.1.19. | 83 | 4명 |
| 강동구 노동권익센터 | 강동구 성내로 19 ※올림픽로 658 확장 이전예정 | ‘18.12.14 (임시개소) | 150 | 18명 |
| 중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 중구 창경궁로 18-1 | 개소예정 | 70 | - |
| 중랑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 중랑구 중화동 279-4 | 개소예정 | 89 | - |

[참고자료3] 공유재산 관계 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사용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料率)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그 전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한꺼번에 내야 한다. 다만, 사용료 전액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 일정한 금액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게 할 수 있다.

④ 삭제

제24조(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2.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라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받아들인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3.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을 하려는 자가 신축기간에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그 재산을 일정 기간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복구 완료기간의 사용료와 그 이자를 일할계산하여 감경할 수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사용료)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시가(時價)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評定價格)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월할(月割) 또는 일할(日割)로 계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행정재산의 사용료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른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시설인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그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간별이나 횡수별로 그 재산의 사용료를 정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계산할 때 해당 재산의 가격평가, 전세금의 산정, 일시 사용 등에 관하여는 제31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④ 법 제2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갱신하는 경우 갱신된 사용·수익허가 기간의 연간 사용료에 관하여는 제31조의2를 준용한다.
- ⑤ 제13조제5항에 따라 일수별 또는 시간별로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그 일수별 또는 시간별 사용료의 산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 ⑥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사용 전에 미리 내야 한다.
- ⑦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료를 분할납부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⑧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게 하는 경우 그 금액은 연간 사용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로 한다.

제17조(사용료 감면) ① 법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료 면제기간은 기부채납된 재산의 가액을 연간 사용료로 나눈 연수(年數)를 초과할 수 없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식재산(이하 "지식재산"이라 한다)의 사용료 면제기간은 20년으로 한다.
- ③ 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을 기부채납한 경우에는 공유재산인 그 부지의 사용료를 제1항의 연간 사용료에 합산한다. 다만, 부지 사용료를 따로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기부채납된 재산의 가액과 제3항에 따라 연간 사용료에 합산할 부지 사용료를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부지의 가액은 최초의 사용·수익허가 당시를 기준으로 제31조를 준용하여 산출하며, 사용료는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 ⑤ 법 제24조제1항제4호에서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이전하는 공익시설의 소유자가 그 공익시설과 직접 관련된 재산을 그 공익시설을 이전하는 기간 동안 사용하려는 경우
 - 2의2.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 사업을 위한 경우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4. 제13조제3항제8호 및 제14호에 해당하는 경우
- ⑥ 법 제24조제2항에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

우`란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조의2(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2조(일반재산 대부 등의 준용) 행정재산 사용료의 요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그 밖에 사용수익허가에 대한 사항은 제23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고, 교환차금을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36조의2를 준용한다.

제26조(대부료의 요율) ① 영 제31조에 따른 연간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또는 다른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채광물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1. 주한외국공관용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
2. 도시계획에 저축되어 대부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③ 서울특별시 소유가 아닌 주거용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0 이상으로 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재개발사업 구역 내에 있는 점유토지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5 이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자가 점유한 토지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1. 공용·공공용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
2.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대부인 경우
3. 삭제
4.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의 문화시설을 「민법」 제39조에 따른 영리법인 또는 개인이 운영하는 경우
5. 「초·중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와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이 교육활동 목적으로 시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⑤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1. 목축을 위한 대부의 경우
2.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3.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등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와 그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운영자가 사용하거나 서울특별시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벤처기업 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5. 「중소기업기본법」 또는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등 중소기업 창업·육성관련 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에서 설치·운영하거나 위탁 운영하는 산업 또는 중소기업 지원시설
6. 서울시가 자본금을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으로서 서울특별시 조례에 설치 근거가 있는 법인에게 사용도록 하는 경우
7. 서울특별시의 도시계획사업 등으로 불가피하게 시유지를 점유·사용하는 경우
8.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조례」 제31조에 따라 매입한 한옥 등을 시장이 선정한 개인 또는 법인에게 위탁 운영하는 경우
9.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학협력을 위해 설치한 DMC산학협력 연구센터를 산학협력사업을 수행하는 대학연구소 또는 대학과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외국연구소에서 사용하는 경우
10.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의 문화시설을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경우
1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의 문화시설을 문화예술창작스튜디오(문화예술 기관·단체나 개인이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문화시설을 말한다)로 운영하는 경우
1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라 재활용센터를 설치 및 운영하는 경우
13.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같은 법 제5조의2에 따른 지역형 예비 사회적기업 및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이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14.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이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 ⑥ 공유임야를 대부하는 경우에 그 대부요율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을 준용한다.
- ⑦ 「초지법」 제18조에 따른 공유지 대부료의 요율은 1000분의 10으로 한다.

제30조(대부료의 감면) ①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9항 및 영 제35조에 따라 외국인투자 기업에 사업목적으로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료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가. 「조세특례 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에 따른 사업부문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

러 이상인 사업

나. 외국인투자 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 이상인 사업

다. 1일 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

라.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외국인투자 사업

마. 외국인투자 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투자법인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지역 내로 이전하는 사업

사.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존 투자법인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사업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75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 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 2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외국인투자 사업

라. 외국인투자 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투자법인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지역 내로 이전하는 사업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존 투자법인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사업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 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인 외국인투자 사업

라. 외국인투자 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으로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투자법인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지역 내로 이전하는 사업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존 투자법인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사업

사. 제2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단지 내 또는 지식산업센터 내의 공유재산

②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9항에 따라 외국인학교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자에게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하는 경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1. 전액감면 : 학생수가 300명 이상인 외국인학교

2. 75퍼센트 감면 : 학생수가 1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외국인학교

3. 50퍼센트 감면 : 학생수가 100명 미만인 외국인학교

③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시장·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 내의 공동시설 용도로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의 감면율은 80퍼센트로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산·연구시설에 대하여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대부료를 100분의 30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1.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 사업,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용으로 설치되고 사용되는 생산시설
2. 과학·기술·산업 등에 관한 조사·연구·시험 등을 위하여 설치되고 사용되는 연구시설